

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**수정공고**

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『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』을 다음과 같이 **수정공고**하오니,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8월 4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※ 본 공고는 「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」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-447호, 2026년 7월 11일)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 공고입니다.

▶ 신청 제외대상 완화, 접수마감일 연장, 평가 및 심의 세부절차 일정 변경, 유의사항 추가

1. 제도개요

☐ 목적

- 중소기업 R&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

☐ 주요내용

- 중소기업부(이하 중기부) 소관 중소기업 R&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“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”으로 지정
-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지정된 “혁신제품”은 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’ 및 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’에서 수의계약 가능(지정기간 3년)

추진근거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 제36338호)」 제26조제1항제5호사목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 제36338호)」 제25조제1항제8호다목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(법률 제21065호)」 제27조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 제35947호)」 제33조제1항제1호
-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(재정경제부훈령 제68호)」
- 「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-11호)」

2. 신청자격

☐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및 제품

- 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('21. 8. 11. ~ '26. 9. 3.) 이내*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&D사업 수행 완료(우수, 보통)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
 - * 중소기업 R&D 최종평가 완료(우수, 보통) 판정 통보일 기준

☐제외대상

- ①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관계법령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
 - * 타부처 혁신제품, 조달청 혁신제품 등의 지정이력이 있는 제품은 지원 불가
 - **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제품은 추후 지정연장 대상에서 제외
- ② 물품식별번호가 미기재*되어 있거나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4회 이상 탈락한 이력이 있는 제품
 - * 접수마감일 이전에 물품식별번호 발급 필수
 - ** 목록정보시스템(www.goods.g2b.go.kr)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
- ③ 물품식별번호 입찰참가 등록물품 세부품명이 제조물품*이 아닌 경우
 - * 신청제품이 **직접생산**(또는 **협업승인****)이 아닌 단순 공급 또는 OEM제품으로 확인될 경우, 평가 이후에라도 '조달적합성검토' 단계에서 보류 또는 제외대상이 될 수 있음
 - **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 대상기업은 **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**(단,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(참고1)의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서 제출 필수)
- ④ 신청제품과 기 수행한 R&D과제 간 연관성이 없는 경우

3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 : '26. 7. 10.(금) ~ 9. 3.(목), 18:00

-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2~3일 전 신청 완료 요망

□ 신청방법

① 나라장터(www.g2b.go.kr)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목록정보시스템(www.goods.g2b.go.kr)에서 제품 등록*(물품식별번호 발급)

- * 신청대상 제품의 입찰참가 등록물품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(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(조달청 고시)」 제13조, 제22조 및 제23조 참고)

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 온라인 접수

구 분	접속 경로
접수	○ www.smtech.go.kr → 로그인 → 과제신청 → 과제신청안내 → STEP1~3 실행 → STEP4 기업주도형 과제신청 → '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' 신청하기 →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서류등록
매뉴얼	○ www.smtech.go.kr → 정보마당 → 알림마당 → R&D사업 관련 공지 사항 → '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청 매뉴얼 안내'

-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(www.smtech.go.kr 공고 확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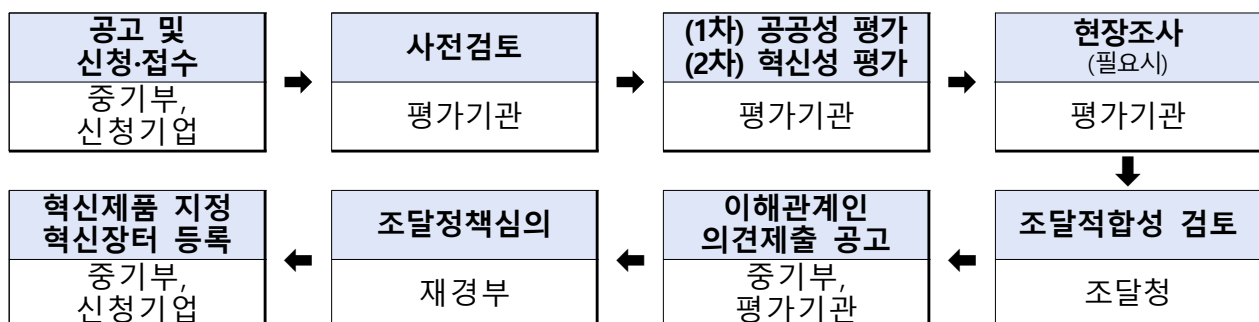
- ※ ①신청서와 ②개인정보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됨
- ※ ③, ⑪, ⑫번은 별도 서식이 없으므로, 보유하고 있는 문서파일을 업로드(증빙자료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 업로드 요망)
- ※ ④~⑩번은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, 문서파일을 업로드
- ※ 접수완료 후 재수정한 경우 "제출하기"를 클릭한 후 "제출완료" 확인 필요

연번	서 식 명	관련 서식	제출 구분
①	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(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)	-	필수
②	개인정보 수집·조회 및 활용 동의서(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)	-	필수
③	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(우수,보통) 증빙자료(공문 및 확인서 등)	-	필수
④	제품 소개서	서식1	필수
⑤	제품 규격서(일반제품)	서식2-1	필수 (택1)
	제품 규격서(소프트웨어)	서식2-2	
⑥	생산설비 소개서	서식3	필수
⑦	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	서식4	필수
⑧	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* 제품생산·판매를 위해 사전·사후에 허가가 필요한 형식, 승인사항 등이 있는 경우, 관계 법령·제도명, 허가 필수사항 반영 여부 등을 기재	서식5	필수
⑨	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* 해당서식 내 '①, ② 신청기업 작성란'만 기재 후 한글파일로 제출 ** ③ 검토의견은 조달청 작성란이므로 공란으로 제출	서식6	필수
⑩	신규지정 혁신제품 개요	서식7	필수
⑪	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위한 기타 증빙자료 * 지식재산권, 실시권 증빙,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** 구매계약서, 공공부문 판매실적 등	-	해당시
⑫	직접생산 확인서 * 신청제품이 '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'인 경우, 직접생산 확인서 제출 필수 ** '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'이 아닌 제품을 신청할 경우 제출 불필요	-	해당시

4. 지정 절차

※ 기업 신청 수요 및 혁신제품 관련 법령, 지침 등의 변경에 따라 지정 절차 및 일정, 최종 지정 대상기업은 변동·조정될 수 있음

□ 지정 절차



* (평가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□ 평가 및 심의 세부절차

① 사전검토 (9월)

-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충족여부 및 적합성 등을 검토

② 대면평가 (9~10월)

-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,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실시
 - * 공공성 평가(1단계), 혁신성 평가(2단계)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공공성 평가(1단계) 결과, 모든 평가지표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한 평가위원이 전체 평가위원의 2/3이상인 경우 혁신성 평가(2단계) 실시
- 혁신성 평가는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인 제품은 통과

③ 조달적합성 검토 (10~11월)

- 대면평가를 통과한 제품은 부정당업자 제재여부, 직접생산 여부, 법정인증, 규격서 등 조달 적합성을 검토

④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공고 (10~11월)

- 대면평가를 통과한 제품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(SMTECH)을 통해 20일 이상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공고 및 접수
 - * 의견제출이 된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재평가

⑤ 조달정책심의 (12월)

- 조달정책심의위원회(재경부) 심의를 통해 지정대상 최종 확정

⑥ 지정 및 인증서 발급 (12월)

- 최종지정 결과 및 인증서 발급 방법 안내(최초 지정기간 3년)
 - * 지정기업은 '혁신조달 종합포털(혁신장터)'을 통해 물품 등록 신청

< 혁신제품 지정 심사기준 >

[1단계: 공공성 평가]

구분	평가지표	적/부
공공성 평가	1. 공공현안 해결 및 사회적가치 창출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제품인지 판단	
	2. 현안의 시급성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, 국민적 수요가 많은 경우,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여부 판단	
	3. 공공구매 필요성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 해결 또는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제품에 해당하는 등 공공시장에서 선제적 구매가 필요한지 판단	

* 공공성 평가(1단계) 결과, 모든 평가지표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한 평가위원이 전체 평가위원의 2/3이상인 경우 혁신성 평가(2단계) 실시

[2단계: 기술혁신성 및 시장성 평가]

구분	평가지표	배점
기술 혁신성 (50)	1. 제품의 신규성(20) 새로운 제품, 신·구 융합제품 또는 핵심기술이 개량되었는지 판단	
	2. 제품의 탁월성(20) 혁신기술 적용으로 월등한 성능향상 및 편익(사용자 편의, 효율성)이 발생하였는지 판단	
	3. 제품의 안전성(10) 의무인증 확보 여부, 제품 사용 중 잠재위험 및 조치방안 등을 판단	
시장성 (50)	4. 시장규모 및 점유율 확보 가능성(20) 해당 제품이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서 차지할 점유율 및 규모 판단	
	5. 공공·민간시장 파급효과(20) 해당 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 확산 가능성,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 적용 가능성 및 규모 판단	
	6. 가격경쟁력 등 제품의 경제성(10) 해당 제품의 판매가격 책정사유, 타당성 등 경제성 확보 여부 검토	
합 계		

5. 유의사항

- 타 부처 혁신제품·조달청 혁신제품 등에 심사 중인 제품도 신청 가능하나, 최종 지정 시 동일 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복 지정 불가
 - 동일 제품 해당 여부는 조달적합성 검토 단계에서 신청제품의 내용·용도·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, 이 경우 신청기업은 지정받을 부처를 선택하여야 함
- 지정연장 제외
 -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제품은 추후 지정연장 대상에서 제외
 - 동일 세부품명번호(10자리)이면서 동일 기술(특허, 실용신안)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- 혁신제품 지정취소
 - 혁신제품 지정기업이 「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지침」 제19조(지정취소)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경우 혁신제품 지정 취소

6. 문의처

담당기관(부서)	문의사항	문의처
중소벤처기업부 (기술개발과)	공고	☎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 ✉innopro@tipa.or.kr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성과확산실)	신청·접수, 신청서 작성, 평가일정 등	
조달청	조달업체 등록,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	☎정부조달 콜센터 (국번없이) 1588-0800

※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

- ◇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: <http://www.mss.go.kr>
- ◇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: <http://www.smttech.go.kr>
- ◇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: “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” / http://pf.kakao.com/_llfqd